

AI경영학과 학생회비 운영회칙

1. 환불대상자: AI경영학과 재학생 중 납부자(전과, 자퇴생은 학생회비 1년 -25% 제외하고 환불)
2. 환불기간: 납부자에 한해서 전체 대상 1학기 학기 개시일로부터 일주일 동안 사유 없이 환불 가능
3. 학생회비 환불 규정은 제 17대 학생회 학생회칙으로부터 명시 (2021.03.02. 기준 시행)

AI경영학과 학생회비 납부 및 운영 회칙

◎ 총칙(기본원칙)

- 제 1조 목적 : 본 규정은 AI경영학과 학생회의 학생회비 수납, 집행, 관리 및 환불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- 제 2조 납부의 자율성 : 학생회비 납부는 회원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며, 어떠한 이유로도 강제할 수 없다.

- 제 3조 회원의 권리 : 가. 학생회비를 납부한 회원(이하 납부자)은 학생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업 및 행사에 우선 참여 할 수 있으며, 학생회 붕괴 해택 및 물품 대여 권한을 갖는다. 나. 납부자는 학생회비의 집행 내역 및 관련 증빙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.

◎ 회비의 수납 및 관리

- 제 4조 납부 금액 및 기간 : 학생회비의 금액과 납부 기간은 학기 개강 전 학생 대표자 회의를 거쳐 결정하며, 회원의 부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한다.

- 제 5조 계좌 관리: 가. 학생회비는 학생회 명의로 아닌 학생회지도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개설하며, 수납 및 관리한다. 나. 회계 담당자인 집행부의 사무국장 및 사무국 부원은 통장 거래 내역 및 현금 영수증, 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 서류를 장부에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.

◎ 환불 규정

- 제 6조 환불 대상 및 사유: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회비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. 가. 자퇴, 제적, 전과, 편입 등으로 학적

변동이 발생한 경우(휴학 제외), 나. 기타 정당한 사유로 본인이 환불을 요청하여 학생회지도위원회 및 학생회 집행부에서 전체 승인한 경우

- 제 7조 환불 금액 산정 기준 : 환불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환불한다.

1) 신입생 기준 개강 전 환불 요청 시 전액 환불

2) 재학생 기준 개강 후 잔여 학기 환불 요청 시 : 다년도/다학기 회비를 일시 납부하는 본 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산정액을 실시한다.

(전체 납부 금액 100%) - (총 적용 학기 수 n% + 당해 학기 n% + 수수료) = 환불금액
단, 당해 학기 진행률이 50% 초과한 경우 해당 학기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진행하지 않는다.

- 제 8조 환불 절차 : 가. 환불을 원하는 회원은 학생회비 환불 신청서 및 학적 변동 증빙서류,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. 나. 학생회는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류를 검토하여 환불금을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.

◎ 예산, 결산 및 감사

- 제 9조 예산 및 결산 공개: 가. 학생회는 매 학기 시작 2주 이내 예산안을 수립하여 공지한다. 나. 학생회는 매달 학생회지도위원회에게 집행 내역 및 통장 사본에 대한 서명을 받아 감사를 받는다.

- 제 10조 회계 감사: 학생회비 집행 내역은 학생회 임기 마지막 달 결산을 진행하여 학과 정기회의를 통해 보고를 진행하며, 사전에 학생회지도위원회에게 받은 감사 내용을 중심으로 납부 회원에게 공개한다.

◎ 부칙

제 1조 시행일 : 본 규정은 공포한 날 2021.03.02.부터 시행한다.

제 2조 규정의 개정 : 본 규정의 개정은 학과 정기회의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한다.

우 송 대 학 교 엔 디 컷 국 제 대 학 A I 경 영 학 과 학 생 회 지 도 위 원 회

